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2024. 8.

정보화전략실

1. 개 정 이 유

최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계획의 지침 반영 등 세부 운영
절차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개정(안 제3조, 제59조의1, 제59조의2)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지침화(안 제10조의1)

다.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시 처리기준 신설(안 제19조, 제20조, 제31조)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안 제38조, 제42조)

마. 기타 세부 운영절차 일부 보완

1) 불복청구 대상 추가 및 방법에 대한 문구 수정(안 제43조)

2)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3. 참 고 사 항

가. 예산조치 : -

나. 합 의 : -

다. 기 타 : 일부개정 주요내용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

I 개정이유

최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계획의 지침 반영 등 세부 운영 절차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II 개정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 개정(안 제3조, 제59조1, 제59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고정형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 규정 문구 수정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기준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지침화(안 제10조의1)

-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사항, 의사결정 등 현행 업무처리기준*을 지침에 편입
- ※ 정보지원실-2397(2016. 9.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계획 보고

○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시 처리기준 신설(안 제19조, 제20조, 제31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경과된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 파일의 파기 등 보호조치 신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권 고지 규정 신설(안 제3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등 보호조치 신설(안 제42조)

○ 기타 세부 운영절차 일부 보완

- 불복청구 대상 추가 및 방법에 대한 문구 수정(안 제43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정보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7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하고, 같은 호 중 "지속적으로 설치되어"를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으로 하며,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8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1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또는 사내변호사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모니터링 결과 소명판정 요청 사항
4.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을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기간 경과 등"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철회

제42조 제1항 중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중 "처리정지"를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로 하고, "개인정보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행정심판을 청구"로 한다.

제59조의1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영상정보 취급부서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 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59조의2(준용규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9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중 등록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p> <p>1. ~ 16. (생략)</p> <p>17. "<u>영상정보처리기기</u>"란 일정한 공간에 <u>지속적으로 설치되어</u>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p> <p><u>17의2. <신설></u></p> <p>18. "영상정보취급부서장"이란 <u>영상정보처리</u> 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란 일정한 공간에 <u>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u>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p> <p><u>1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u>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p> <p>18. "영상정보취급부서장"이란 <u>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u>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p>
<p><u>제10조의1 <신설></u></p>	<p><u>제10조의1(개인정보보호위원회)</u> 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또는 사내변호사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u>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관리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u></p> <p>④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2. <u>주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u> 3. <u>개인정보 처리 업무 모니터링 결과 소명 판정 요청 사항</u> 4. <u>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u>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u></p>
<p>제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u>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u>,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등)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p>	<p>제2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등)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u>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u>,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p>
<p>제3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u>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u> 등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① (생략) 1. ~ 3. (생략) 4. <신설></p>	<p>제38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철회</p>
<p>제4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u>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u>를 청구할 경우 정정등 요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분야별 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10일 이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u>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u>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제4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u>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u>를 청구할 경우 정정등 요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분야별 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10일 이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u>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u>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③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u>개인정보 처리정지</u>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u>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u>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u>처리정지</u>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정정등통지서에 작성하여 해당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분야별 책임자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u>요구서</u>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u>조치</u>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u>요구</u>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정정등통지서에 작성하여 해당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삭제></p>
<p>제43조(불복청구) 제39조에 따른 열람, 제41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42조에 따른 <u>처리정지</u> 등의 요구에 대하여 공단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u>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43조(불복청구) 제39조에 따른 열람, 제41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42조에 따른 <u>처리정지나 동의 철회</u> 등의 요구에 대하여 공단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u>행정심판을 청구</u>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59조의1 <신설></p>	<p>제59조의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영상정보취급부서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p>

	<p>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p>
<p>제59조의2 <신설></p>	<p>제59조의2(준용규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p>	<p>[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p>

[별지 제1호 서식]

《 현 행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	----	------	------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개 정 안》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